

보도시점 2026. 7. 13.(월) 조간
2026. 7. 12.(일) 12:00

배포

2026. 7. 10.(금)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관리, 허위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 근절 기반 마련 -
- 이송처치료 현실화, 응급의약품 보강으로 이송서비스 품질 향상 -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2년간 동결되어 온 이송처치료 현실화,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현장 현실에 맞춘 환자인계 절차 합리화 등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정 규칙이 7월 13일부터 공포·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구급차의 안전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현장 특별점검(2025년 7~9월)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이송체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간의 경과 : 대통령 지시(‘25.6.) → 특별점검(’25.7~9.) → 구급차 제도 개선방안 도출(‘25.12.)
→ 입법예고(’26.2~3.) → 규제심사(‘26.5~6.) → 법제처 심사(’26.6.) → 공포

앞으로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운행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여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민간 이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지난 2014년 인상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하였다.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하여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하여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응급환자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인계 절차를 합리화한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적절한 응급의료종사자를 추가하여 실제 응급실 현장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였다. 동시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령은 2026년 7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나, 현장 준비를 위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또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데이터 전송 장비 구비 상황을 감안하여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올해 2월 함께 입법예고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변경 사항

<별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영진 (044-202-2550)
		담당자	사무관	송진성 (044-202-2641)



붙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변경 사항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Ambulance information & Records)

- 구급차의 운용기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및 웹페이지(WEB)로 구성

* 응급의료법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 및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모바일 앱(APP)	AiR 웹페이지(WEB)
응급의료종사자가 스마트폰·태블릿으로 현장에서 실시간 기록 입력	AiR 시스템을 통해 구급차 기록 작성 및 조회하고 관리

○ (주요기능) 민간구급차 운행기록에 관한 전자적 관리

주요기능	상세내용
구급차 등록·조회 관리	구급차량의 제원 및 소속 기관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실시간으로 조회·관리하는 서비스
출동 및 처치기록 관리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웹/앱을 통해 등록하고, 조회하여 효율적으로 증빙·관리하는 서비스
운행기록대장 관리	차량별 운행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서비스

○ (변경사항) GPS 위치정보(출발·도착지·이동경로), 운행 시간(출발·도착시간)이 실시간 연동되어 운행기록을 자동 생성

- 자동 수집된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목적·누적 주행거리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운행기록대장을 작성·관리 가능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흐름도 >

